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58 발의연월일: 2020. 10. 29.

발 의 자:김상희·신정훈·양정숙

오영환 · 이용빈 · 이정문

전혜숙 · 한정애 · 홍성국

김회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3억 SDR(약 5천억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 사고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금액임.

그런데 일본과 독일의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하여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조치액또한 일본 1,200억엔(약 1조 3천억원), 독일 25억유로(약 3조 3천억원)로서, 우리나라의 배상조치액 5천억원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일본의 배상조치액과 비슷한수준인 9억 SDR(약 1조 5천억원)로 상향함으로써, 원자력사고에 관한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본문 중 "3억"을 "9억"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상책임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원자력사고에 대한 원자력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배상책임 한도) ① 원자	제3조의2(배상책임 한도) ①
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	
마다 <u>3억</u> 계산단위 한도에서	<u>9억</u>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자력손해가 원자	
력사업자 자신의 고의로 발생	
하였거나 그 손해가 발생할 염	
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	
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	
상책임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